

**[별표 2의2] 입주자 선정 기준 (제10조제2항 관련)**

<p>1. 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: 3점</p> <p>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: 3점</p> <p>※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한다.</p>
<p>2.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: 2점</p>
<p>3. 장애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: 2점</p> <p>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: 1점</p>
<p>4.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 기준의 50% 이하인 경우 : 3점</p> <p>※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한다.</p>
<p>5.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(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)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가. 24회 이상 : 3점</p> <p>나. 12회 이상 24회 미만 : 2점</p> <p>다. 6회 이상 12회 미만 : 1점</p>